

(第73回—文化教育第2次)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蘇中天 車奉五委員님께서 教育廳 만 2일을 하고, 그 다음 公報官室과 文化觀光局 1日, 그 다음에 世宗文化會館 1日, 그 다음 서울市立大學校 1日, 그 다음 마지막날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教育院 1日 이런 修正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行政事務監査 日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月 22日과 23日 火, 水 서울特別市教育廳, 11月 24日 木, 公報官室·文化觀光局, 11月 25日 金曜日 世宗文化會館, 11月 28日 月曜日 서울市立大學, 11月 29日 火,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教育院 이런 行政事務監査 日程을 잡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다하므로 방금 말씀드린 日程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部分은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

目 次

1. 監査의 目的
2. 監査期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4. 監査班의 編成
5.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
6. 主要監査 事項
7. 監査對象 機關의 資料提出
8. 監査要領
9.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

1. 監査의 目的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교육위

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1994년 11월 22일(화)~1994년 11월 30일(수)까지(9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6개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공보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 문화관광국	
○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4. 監査班 編成

구분	소속정당	위원명	비고
반장	민주자유당	李 喆 鎬	
위원	"	金 仁 雨	
"	"	金 寅 東	
"	"	朴 善 童	
"	"	孫 馥 模	
"	"	梁 元 模	
"	"	吳 柳 根	
"	"	李 永 輔	
"	민주자유당	鄭 一 龍	
"	"	車 奉 五	
"	"	崔 沆 洛	
"	민주당	蘇 中 天	
"	"	李 載 震	

○ 사무보조원 : 7명

- 전문위원 : 정문효
- 감사보조 : 구자선(의안1계장)

강영태

임성락

• 속기사 : 2명

• 녹음요원 : 1명

• 기타필수요원 5. 監査日程 및 監査場所				• 외국도시와의 문화, 행정, 경제 등의 교류 및 시정 국외홍보에 관한 사항 • 국제대회 참가 및 민간단체 해외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세종문화회관 • 1994년도 예산집행사항 • 공연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 관리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 중장기 대학 발전 계획 • 1994년도 예산집행사항 • 인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지도 및 발전대책에 관한 사항 • 각종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 또는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 기본운영계획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수요조사와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994년도 예산집행사항 • 기타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 또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교육청(특정사안) • 1994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1994년도 중·고등학교 각종 시설건축 사항 • 각종 학교 정규학교 승인에 관한 사항(특수지 지정학교 활성화 계획 포함) • 사설학원 인가·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관련 사항 7. 監査對象 機關의 資料提出 ※피감사기관은 공히 다음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교육청 제외).
일 자	대상기관	감사장소	방 법	
10월22일 (화) 10:00	서울특별시교 육청	서울특별시교 육청회의실	• 현황보고청 취 • 자료확인	
11월23일 (수) 10:00			• 질의·답변 • 현장확인 • 기타	
11월24일 (목) 10:00	공보관실	문화교육위원 회 회의실	〃	
14:00	문화관광국	문화교육위원 회 회의실	〃	
10월25일 (금) 10:00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	
11월28일 (월) 10:00	서울시립대학 교	서울시립대학 교 회의실	〃	
10월29일 (화) 10:00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교육 원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교육 원 회의실	〃	
6. 主要監査事項 ○ 공보관 • 1994년도 예산집행사항 •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정, 홍보 및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보관 운영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문화관광국 • 1994년도 예산집행사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시사편찬 및 문화재 관리·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p>가. 1994년도의 업무현황 나. 1993년도 예산결산서 다. 1994년도 예산집행 현황 라. 1994년도 세입현황 마. 1994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바. 1994년도 국정감사시 제출된 자료 사본 사. 199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1994년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자.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차. 19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카. 기타 당위원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p> <p>8. 監査要領</p> <p>가. 감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의 순으로 실시하고○ 특히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p>나. 출석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p>다. 감사진행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감사선언(위원장)(2) 위원장 인사(3) 선서(4) 업무현황보고 청취<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5) 질의 및 답변(6)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결과 강평(7) 감사종료선언	<p>라. 감사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감사대상사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무 전반(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5)<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됨•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시행령 제17조 6)<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4) 감사상의 주의의무(시행령 제17조 7)<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5) 공개의 원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p>9.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p> <p>가.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채택(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p>나.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2) 당일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은 감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 (5) 본회의 의결

○委員長代理 蘇中天 委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18分 散會)

○出席委員

蘇 中 天	朴 善 童	孫 馥
梁 元 模	吳 柳 根	李 永 輔
車 奉 五	崔 沆 洛	李 載 震

○專門委員

鄭 文 孝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教育廳

企 劃 管 理 室 長	金 鎮 成
社 會 教 育 體 育 局 長	李 爽 雨
教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金 東 臣
世 宗 文 化 會 館 長	柳 千 秀